

##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2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로 주민 편의 제공
- 나.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에 따른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 조정으로 부정주차를 근절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월 주차요금 10,000원 ⇒ 15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2항)
- 나.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 대한 월 주차요금 10,000원 부과(안 제5조의2 제2항 단서)
- 다.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요구 조문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 10,000원 ⇒ 30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3항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
- 나.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10. 25 ~ 11. 14(의견 없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“월 10,000원”을 “월 1만5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점포 앞 전용구역을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는 월 1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

제5조의2제3항 중 “이동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,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10,000원의”를 “3만원의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·운영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<u>월 10,000원</u>으로 하고, 운영시간은 18:00~24:00까지로 한다.</p> <p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③ 제2항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<u>이동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,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10,000원의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</u></p> <p>④ ~ ⑤(생략)</p>	<p><b>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·운영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월 1만5천원</u>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점포 앞 전용구획을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는 월 1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----- ----- -----<u>3만원의</u>----- -----.</p> <p>④ ~ ⑤(현행과 같음)</p>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807)

**1. 의안명** :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12. 1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12. 6(월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0. 12. 16(목)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로 주민 편의 제공
-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에 따른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 조정으로 부정주차를 근절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월 주차요금 10,000원 ⇒ 15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2항)
-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 대한 월 주차요금 10,000원 부과(안 제5조의2 제2항 단서)
- 부정주차 차량 이동조치 요구 조문 삭제 및 부정주차요금 10,000원 ⇒ 30,000원으로 조정(안 제5조의2 제3항)

### 4. 근거법규

- 「주차장법」 제9조 제2항

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그 수입금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
  
- 주차요금 상향 조정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주민은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그 간의 주차요금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차요금을 현실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